



## 의류 회사 고객명부 관련 영업비밀 부정취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45

###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도쿄지방법원	사건 번호	평정19년(와) 제27846호
판결 일자	2008. 9. 30.	판결 결과	전부 기각
원고	재팬슈퍼바자네트워크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쥬얼리·폰도, 2. 을2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4호, 5호, 6호		
영업 비밀	고객 명부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고객 명부, 비밀관리성		

### 02 사건 개요

원고는 의류, 장신구, 패션잡화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하는 회사로 2005년 “유한회사 비엔 클라세”로 설립된 후, 현재의 “재팬슈퍼바자네트워크 주식회사”가 되었다. 피고 회사는 귀금속, 의류, 잡화 등의 판매를 업으로 하며 소외 주식회사 “비소니”는 유명 브랜드 제품 전시회 판매 등을 업으로 한다.

피고 을2는 소외회사의 전 사원이었으며 2004년 9월 30일자로 해고되었다.

소외 회사는 2005년 8월 17일 A에게 이 사건 고객 명부를 200만 엔에 매각하였고, 10월에 파산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후 A는 2005년 9월 1일 설립 준비 중인 원고의 전신 회사 “비엔 클라세”에게 본건 명부를 다시 매각했다.

원고는 A에게서 구매한 본건 명부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 피고 을2가 이를 무단으로 취득하고 피고 회사가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03 주요 쟁점

원 고



피 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고객명부를 피고가 무단으로 취득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부정경쟁에 해당한다.

고객명부는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그 비밀유지를 위해 관리되고 있었다.

### 04 판결 요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의 요건 상,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

본건 명부의 비밀관리성 유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 명부가 제1매매와 제2매매를 거친 바, ① 소외회사에서의 비밀관리성, ② 제1매매에서 매수인 A의 비밀관리성, ③ 원고의 비밀관리성을 각각 살펴보아야 한다.

원고는 소외회사가 본건 명부의 관리자 및 취급자를 특정인으로 고정하고 있었다는 점, 백업용 정보 매체를 잠금장치 서랍에 관리했다는 점, (秘)지정을 하여 일반 직원의 접근을 제한했다는 점을 들어 비밀관리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나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

제1매매에서 매수인 A의 비밀관리성에 있어서도 본건 명부의 제1매매 계약서 상 이것이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기에 단순한 명부와 기기의 매매 계약서에 해당하고 이 점은 제2매매 계약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본건 명부가 A쪽에서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관리되었다고 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따라서 본건 명부에 대해 원고의 비밀관리성을 검토할 것도 없이 원고가 본건 명부를 취득하기 이전 시점에서 이미 영업비밀로서 비밀관리성을 충족했다는 입증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05 Key Point

---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